



# 한아름특허법률사무소

<http://www.hanbrand.co.kr/>

## \*인사말씀

- 귀하(사)의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시고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기업간의 경쟁이 갈수록 점점 더 격화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산업재산권의 확보와 그 효율적인 관리야말로 기업경영의 요체라 하겠습니다.
- 특허청에서 심사관, 심판관으로 다년간 재직하면서 그간 쌓아온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등의 국내출원, 등록, 심판, 감정 및 소송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기술개발에서부터 개발기술의 권리화 및 사업화, 판매에 이르기 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관련 업무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 현황**

2001년 한아름특허법률사무소 설립

**\*대표 변리사 약력**

영남대학교 졸업

상공부 마산수출자유지역 관리소

상공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관)

특허청 상표2과 (심사관)

특허청 의장1과 (심사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서기관)

## \*주요업무 분야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 및 등록
- PCT 및 해외출원 진행
- 선행기술 조사 및 Patent Map 작성
- 특허 및 상표, 디자인의 심판, 소송, 침해사건
- 민,형사 소송에 따른 분쟁
- 기술평가, 권리범위에 대한 업무
-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의 감정
- 우선권 주장
- 특허권 및 상표권 양도
- 등록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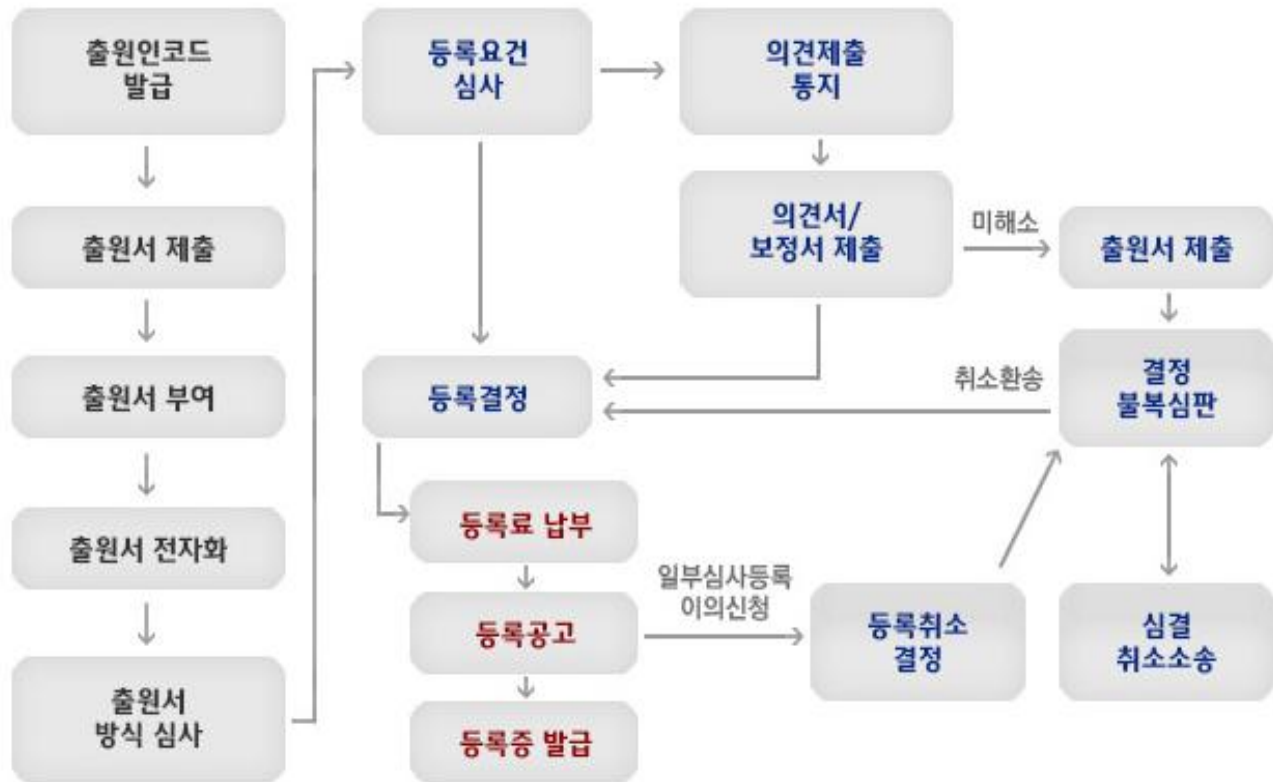
## \*국내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절차

- \* 사건 접수 후 약 2주 이내 명세서 초안 작성 등 신속한 업무처리
- \* 사전 선행기술조사를 실시, 출원 기술의 품질과 우월성확보



## \*국내상표 및 디자인(의장) 출원절차

- \* 사건 접수 후 약 2주 이내 명세서 초안 작성 등 신속한 업무처리
- \* 사전 선행기술조사를 실시, 출원 기술의 품질과 우월성확보



## \*해외특허 출원절차

### •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 • 해외출원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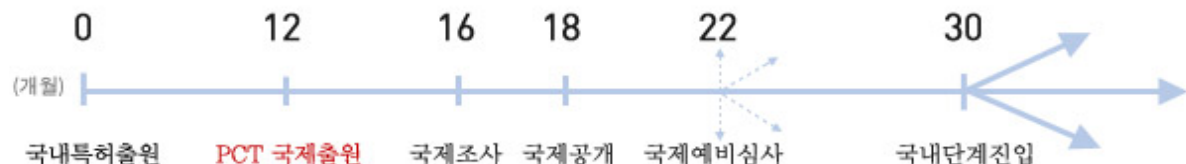
#### ▶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 ▶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해외상표 출원절차



해외에서 상표 및 특허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상표 및 특허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외상표등록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나뉘집니다.

### ■ 해당국에 직접 출원

해당국 변리사를 통하여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저희 사무소가 직접 해당국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해당국 특허사무소에 출원신청을하고 등록을하며 갱신 및 기타 절차를 취합니다.

### ■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이제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및 특허를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국제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에 비용이 절약되고 절차도 간단하지만 한국특허청에서의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이 소멸시 국제등록도 함께 소멸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 유럽연합(EU)를 통해서 출원하는 방법

유럽연합에 출원함으로써 동구권 및 서부유럽 등 전반적인 유럽 공동체에서 상표권 및 특허 권이 보호됩니다. 개별국출원에 비하여 비용이 간소하고 절차도 간편하지만 유럽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한 국가에서라도 미의신청이 접수되면 등록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주요 실적

특허  
/  
실용  
신안

•국토해양부, 화성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등 관공서 및 연구소

•한국항공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순천대학교 등 국내주요 대학교 산학협력단

•NH농협, 쌍용제지, 동원에프앤비, 성준항공, 지엘유나이티드, 몽블랑클라임, 911무인경비시스템 등 다수의 국내유수 기업

상표  
/  
디자인  
(의장)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다수협회

•다수의 벤처기업,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및 사업자

# 한아름특허법률사무소

<http://www.hanbrand.co.kr/>



## 오시는길



- 대표전화 02-555-4955    팩스 02-555-2933
- 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20 영진빌딩 302호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역삼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8분거리입니다.  
 영진빌딩 1층에 화로본(음식점)가 있으며, 한아름특허법률사무소는 3층 302호입니다.



Tel : 02 - 555-4955 (대표전화)  
 Fax : 02 - 555-2933  
 E-mail : [patent4955@hanmail.net](mailto:patent4955@hanmail.ne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 16(영진빌딩302호)

### 감사합니다